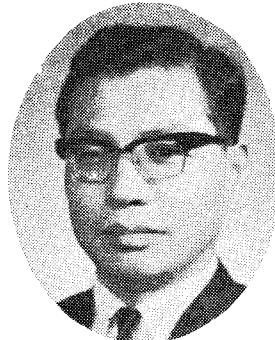


獨占規制法은의必要한가



全國經濟人聯合會

專務理事

金立

三

금번 經濟企劃院은 所謂 獨占規制法 試案을 公表함으로써 一時 暫時하였다 一連의 價格論爭에再次 불씨를 던지었다.

全文 29 條 附則으로 되어 있는 同試案을 一覽하고나서 遺憾스러우나 公正去來法制定을 舉論할 때와 같은 結論에 到達하였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數參年前 公正去來法 制定에 對한 論議가 紛紛하였다 때에도 그 法이 너무나 理想에 치우쳐 實際로 執行될 現實與件을 疎忽히 하였으므로 實効性은 且置하고 屋上屋으로 副作用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反對意見이 支配的이어서 同法案이 아직도 國會에 繫留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經濟建設에 總力を 傾注하여 온結果 지난 1968 年度의 經濟成長率은 13.1% (暫定推計)에 이르렀고 1人當國民所得도 164 弗을記錄하여 그當時와 比較하면 顯著한 量的成长을誇示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量的인 經濟成長이 바로 先進諸國과 對等한 經濟水準에 到達했음을 뜻하는 것 이 아니라는 點을勘案할 때 果然 지금 獨占規制法을 制定하지 않으면 안될 經濟與件에 處하여 있는 時期인가, 또한 이러한 經濟現實속에서 當局이 期待하고 있는 立法趣旨의 具現이 同法案과 같은 立法規制로서 可能할 것인가에 對하여는 많은 疑問點을 提起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處하여 있는 經濟의 現實與件은 어여하여 왜 獨占規制立法의 必要性에 對하여 疑問視하는가에 關한 몇 가지 理由를 살펴 보기로 한다.

所謂 獨占價格問題 뿐만 아니라 近者舉論되고 있는 一連의 價格論爭은 根本的으로 韓國經濟의 發展段階가 아직도 幼稚段階에 있으므로 因하여 市場與件이 不合理하고 物量需給이 均衡을 이루지 못하여 惹起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論爭이 緣由된 國內經濟與件

을 깊이省察한 後에 同法制定의 必要性을 再考해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면 韓國經濟의 現實與件은 어떠한가.

于先 經濟의 規模가 國際水準에 比하여 불때小規模이다. 앞에서 지난해의 우리나라 經濟成長이 놀라울 만큼 高度成長을 達成했고 1人當國民所得도大幅增加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經濟規模가 작았던데 比하여 相對的으로 增加率이 높았다는 것이지 經濟規模自體가 絶對的으로 先進外國과 어깨를 같이할 수 있는 規模로 發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點은

充分히 알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우리나라 G.N.P가 經常價格으로 1兆 5千億원이었으니 이를 大略 美貨로 換算하면 56億弗內外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美國에 있어서는 一個企業體에 不過한 G.M.C의 年間賣上高 207億弗과 比較한다든지 「포드」社의 120億弗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經濟規模가 열마음 작은 것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 다음表와 같이 重要產業施設의 國際比較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企業의 零細한 規模를 알 수 있겠다.

表 1 重要產業施設의 國際比較

業種別	單位	國際規模(A)	68年現在의 規模		B/A(%)	
			最 小	最 大	最 小	最 大
시멘트	年產千M/T	1,000	400	1,700	40	170
板유리	年產千C/S	1,000~1,500	—	900	90~60	—
Nalon 糸	日產 M/T	30	3	10	10	33.3
Acrylic Fiber	〃	30	6	7.5	20	25
P. V. C.	年產千M/T	40	6	15	15	37.5
新聞用紙	〃	60	18	39	30	65
綿紡	千錘	60	—	42	—	70
梳毛紡	〃	20	—	7.8	—	39

資料：韓國產業銀行

다음 非正常的인 流通構造가 市場價格形成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

單一生産業者에 依하여 供給되고 있는 板유리의 例를 보아도 이것이 一般生必品보다는 어느程度 單純한 流通段階를 經由하는 品目인데도 무려 4~5段階의 流通經路를 거쳐야 한다. 또한 工場渡價格을 100으로 보았을때 最終消費者에게는 150.8(「마진」은 50.8%)이라는 價格으로 變貌되어 높은 流通「마진」을 形成하고 있음이 生產性本部의 調査에 依하여 밝혀진바 있다.

이렇듯 韓國經濟의 現實은 國際單位에의 未治市場의 狹小, 流通構造의 非合理性 等의 根本的인 經濟與件의 整備를 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現實與件의 整備를 促進함이 없이 모든 經濟活動을 規制하는立法措置를 取하였을 때 同法制定의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것인가에 對하여는相當한 疑問이 앞서는 것이다.

3

經濟活動을 直接規制하는 立法은 차잇하면 日進月步하는 技術革新과 世界產業技術活用에 큰支障을 가져올 憂慮가 있을뿐만 아니라 新規製品의 開發, 市場開拓等을 沮害하는 結果를 招來할 公算마저 크다 할것이다.

우리는 近代產業國家를 建設하는데 必要한 充分한 與件을 具備하고 있지 못하다. 賦存資源이 貧困하고 資本力이 脆弱하여 技術水準도 낮은 形便이 그것을 뜻한다.

이런 狀況에서 經濟成長을 為하여 우리가 擇하여야 할 「술길」(Short Cut)은 오로지 產業技術을 研究 關發하고 先進 外國의 高度化된 技術을 移植消化시켜 이를 有用하게 利用함으로써 뒤떨어져 있는 技術水準을 先進諸國에 뒷지 않게 向上革新시킴 뿐이다. 그런데 技術의 革新이란 公式的인 技術導入에 依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만 아니고 어떻게든지 外國의 技術을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商品을 開發하고 이 新技術을 더욱研磨하여 가는데에서 形成되는 것으로理解된다.

그리면 同規制法의 制定이 時急을 要하는 技術革新에 어떤 影響을 미칠것인가?

創意的이고 研究 前進하는 企業이 先進外國의 技術을 導入하여 새로운商品을 開發함으로써 唯一의 「메이커」가 되었다고 假定할 때 이 企業은 同法으로 因하여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所謂 獨占事業으로 規制를 받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어서야 通者生存의 鐵則만이 通用되는 이 冷酷한 國際輸出競爭의 涼中에서 어떻게 輸出立國의 至上目標를 達成하도록 新種商品의 開發 및 輸出增大를 成就할 수 있을 것인가 저으기 念慮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外資誘致에의 影響을勘案하여立法問題를 考慮하여야 할것이다.

위에서도 指摘한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民族資本의 形成이 빈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經濟建設에 所要되는 資源을 確保하기 為하여 周知하다시피 內資動員에 總力を 기울이는 同時に可能한限 好條件의 外資를 많이 誘致하려는것이 現實이다.

그러나 또한 經濟行政의 不合理, 投資環境의 不利等 外資誘致與件의 未備로 時急한 外國人の 直接乃至 合作投資勸獎政策이 難關을 겪고 있는것도 看過할 수 없는 現實이다. 이러한 때에 同法의 制定으로 官權干涉의 印象마저 짙게함은 外國人の 投資意慾을 沮喪시키어 外資誘致에相當한 影響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實際調查에 依하여 나타난 바를 보더라도 外國人投資家들이 指摘한 外資誘致의 沮害要因 가운데 가장比重이 큰 要因은 經濟行政節次의 번거로움이었다. 그렇다고 外資誘致의 沮害要因을 排除하기 為하여 同法適用에서 外國人投資企業體를 除外한다면 그때는 또다른 深刻한 問題가 摟頭될 것이다.

4

오늘날 世界各國은 國際經濟趨勢가 規模의 經濟에 立脚하여 單一獨占乃至 企業合併 等 大

規模化政策을 廣範圍하게 急速度로 推進하고 있으며 또한 各種 特殊法을 制定함으로써 獨占規制를 다른類似한 法令等을 實質적으로 有名無實化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同法의 制定이 國際經濟潮流에逆行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찍이 資本主義經濟體制를 確立하여 날로 高度化되는 資本主義의 豐饒를 누리고 있는 美國은 어떤 經濟的 背景에서 어떻게 獨占問題가 다루어졌는가 깊이 살며 參考로 해야 할 것이다.

1840年頃 南北戰爭에 따른 軍需의 刺戟이 工業生產力を 飛躍的으로 增大시켰고 이가 工場規模와 資本力의 巨大化를 促進하였으나 一方 新技術과 써로운 動力源의 利用에 依한 企業의 生產能率의 向上結果 必然的으로 企業間의 競爭이 激化되었다. 따라서 더욱 큰 工場規模와 資本投下가 要請되었으며 激甚한 競爭으로부터 回避하자는 要請이 合致되어 1880年代에 企業結合이 摟頭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렇게해서 成立된 「트러스트」가 大規模化되자 規制氣運이 膨大되어 1890年에는 「셔만」法, 1914年에는 「크레이튼」法이 制定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0年代의 大恐慌期에 接하자 「뉴딜」政策의 一環으로 1933年 全國產業復興法이 制定되어 「셔만」法의 適用을 停止하였고 2次大戰期間에도 軍需產業의 發展과 政府의 投融資로 大企業을 強化하였던 것인데 이런潮流는 近來의 美行政府에도 繼承되어 「아이젠하워」政府時代에는 『企業의 規模는 獨占禁止法 適用과는 關係가 없다』는 思考가支配的이었다.

그런데 注目할만한 事實은 最近 「하바드」의 「갈브레이스」教授가 말한바 있는 『新產業社會의 出現』과 더불어 美國內에서는 Anti-trust Law의 存立自體가 오히려 問題視되고 있다는 點이다. 新產業國家라는 著書도 發表한바 있는 그가 美上院 企業特別委員會의 獨占小委에서 行한 演說의 몇句節을 引用하여 보겠다.

그는 于先 現代 資本主義社會에서 獨占規制法이 果然 어떤 效果를 거둘수 있을 것인가를 疑問視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結局 經濟發展에 對한 우리의 要請을前提하게될 때 大規模화와 거기에 따른支配의 傾向이 強해질 수록 企業規模와 市場支配力에 對處해야할 現行 反

「트러스트」의 努力은 「제스추어」에 지나지 않는
다 나는 反「트러스트」法이 市場支配力を 全然
가지지 않는 企業을 괴롭히면서 實際 行해지고
있는 市場支配力を 合法化시켜 反「트러스트」法이
本來의 立法趣旨를 遂行하고 있다는 印象을 우
리에게 줌으로써 安心시키려 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그는 所謂近代化를 指向하고 있는 開發途上國家들이 初期產業國家로서의 位置에서 조
차도 獨占規制를 論하는데 對하여 『反「트러스트」
法을 갖지 않은 美國以外의 產業國家는 대단히 有
効한 機能을 發揮하는 反「트러스트」法을 廢止해
야만 된다는 意見이 「돈·키호테」的 發想이라고
믿기 어려워 할지 모르나 美國의 反「트러스트」
法은 말하자면 民間傳承의 神話의 一部에 지나
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日本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太
平洋戰爭에서 敗北한 日本 軍閥의 財閥과의 結
托을 解體시키기 為하여 美占領當局에 依하여 마
련되었던 獨占規制法은 急速한 戰後復舊와 더불어
新產業社會로의 移行이 促進되자 많은 特別
法(電業法, 輕機械輸出振興法 等 12個)을 制定
하여 獨占規制法의 適用을 實事上 排除하고 있
는 實情인 것이다.

5

以上에 指摘한 몇 가지 理由外에도 獨占規制
立法의 不必要性을 舉論할만한 點은 적지 않다.
于先 複雜多岐한 經濟現象이나 行爲를 單一法에
依하여 直接 規制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點과 法
制定이 立法技術上 不可能할 것으로 보이는 바
同法의 制定은 實效를 期하기 보다 副作用만 深
化시키는 結果가 되지 않을 까하는 點 等이 그것
이라 하겠다.

그러나 自由資本主義經濟體制를 갖추고 經濟
의 民主主義를 俱現하려는 지금 消費者保護, 價
格正常化, 企業體質改善을 通한 國民經濟의 發
展을 圖謀하려는 同法의 趣旨는 期必 이루어져
야 할 課題일진대 이를 達成할 수 있는 方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諸 經濟與件이 整備되고 企業은 完壁한 經營
合理化를 通하여 生產原價를 낮추며 消費者도 消

費者主義意識이 徹底하여 스스로 權益保護에 앞
장설 수 있는 理想의in 狀況이 到來하기 前에 라
도 이미 政府는 同立法趣旨에서 跟한 諸般目的
을 達成할 수 있는 政策手段을 가지고 있다는
點을 強調하고 싶다.

政府는 이미 金融, 財政, 外換, 租稅, 貿易計
劃等 모든 經濟行政의 調整機能을 갖추고 있으
며 더우기 立法趣旨나 規制內容이 類似한 現行
法令(物價調節에 關한 臨時措置法, 不正競爭防
止法)이 있으므로 行政力を 強化하고 法運用에
妙를 期함으로써 消費者保護와 價格正常化等 綜
合的이고 合理의in 經濟運營의 實效를 얻도록 注
力한다면 所期의 目的達成은 可期할 수 있을 것
이므로 이것이 오히려 實效있는 處事일것으로
믿어진다.

무릇 一般立法에서는 勿論이려니와 特히 經濟
立法에 있어서는 一時의in 輿論이나 感情에 左
右되어 立法을 서두르는 것은 옳바른 立法姿勢
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자칫 잘못하면 矯角殺牛
의 愚를 犯할 憂慮가 큰 것이다.

그러므로 開放經濟의 利點을 살리고 自由競爭
에 依한 自律調整, 需給調節을 期하는 보다 根
本의in 解決策을 先行的으로 模索 講究해야 할
것이다. 이를 為하여 政府는 政府대로 옳바른
經濟行政의 運營을 期해야 할것이고 業界는 業
界대로 經營合理화를 通한 「코스트·다운」으로
國際競爭力を 強化하고 企業體質을 改善하여야
할것이며 消費者는 消費者대로 經濟的側面에서
民主主義의 主權은 消費者에게 있다는 것을 새
삼 깊이 認識하여 消費者保護運動을 活發히 展
開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全國民과 政府, 業界가 다같이 國民
經濟의 健全하고 安定된 發展을 為하여 長期的
인 眼目에서 漸進的in 改善을 圖謀하여가면 우리
의 經濟도 大規模化되어 國際水準에 이르를 것
이고 우리의 國民所得도 增大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獨占規制를 論하는 것은 우리의 經濟
가 1人當 國民所得이 적어도 3~5百弗 水準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慎重히 다루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再參 強調하면서 近者 舉論되고
있는 獨占規制立法에 對하여 平素에 느끼고 있던
所信을 몇자 跟하는 바이다.